

<붙임 1>

**2023년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3. 6. 28.



목 차

1. 사업 개요	5
2. 사업 신청	7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13
4. 사업 관리	17
5. 완료 보고	17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19
[붙임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	23
[붙임 3]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신청 서약서	24
[붙임 4]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신청 서식	25
[붙임 5] 용자 승인서	29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나. 추진일정

- **(용자접수)** 2023년 7월 3일(09시) ~ 용자금 소진까지 상시 접수
- **(심사)**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이내
 - ※ 과다한 용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심의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 연장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24조(용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용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용자 및 접수 규모

- **(용자규모)** 연간 총 2,7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용자규모	1,700억 원	1,000억 원

- **(접수규모)** 총 3,300억 원

구분	환경산업	녹색전환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접수규모	1,800억 원	1,50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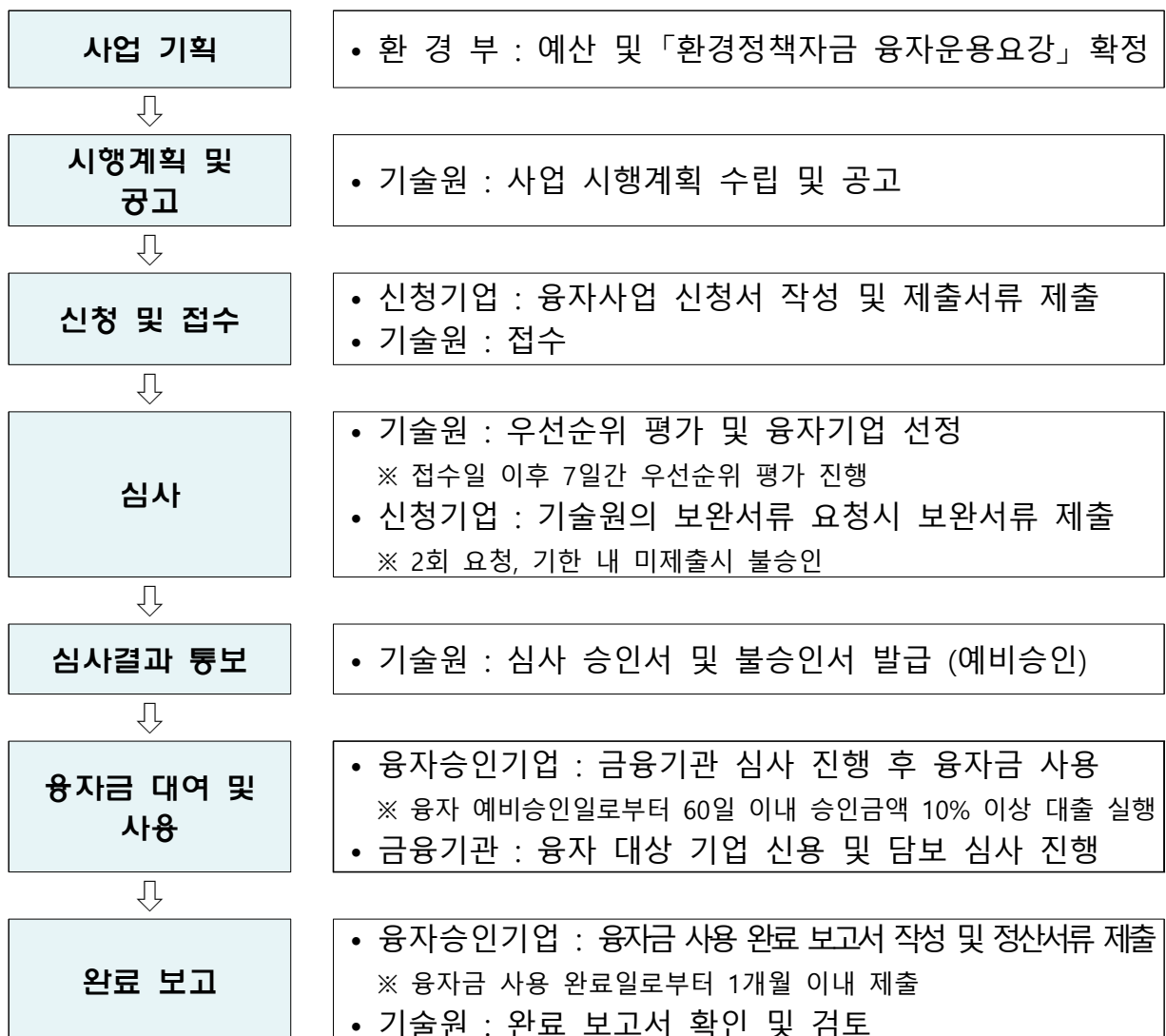
라. 용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이내
 - ※ 승인 후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 제20조(용자금 사용기간)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금 사용 기간 연장 가능

마.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용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5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신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바. 추진 절차



2. 사업 신청

가. 신청 대상

○ 중소기업·중견 환경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중견기업

사업명	분야		용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중소·중견 환경기업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 환경기업 포함)

- 환경산업 :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해당 기업
 -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의 1)에서 4)까지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1)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2)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3) 환경 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4)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 ④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 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 「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 ⑦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제조산업체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의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단, 재제조 대상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나. 신청 제외 대상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지설자금”은 융자승인과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제3조 제21호의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로, 이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제26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6조 제1항 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 제4항의 조치(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인취소(최초인출기간 만료) 사업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 제4항의 조치(일부 승인포기 신청) 없이 방치하여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부 승인취소(사용기간 만료) 사업자로, 용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성과보고' 의무에 불응·거부하거나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의무 연도 직후 1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업자
- 기업 및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용자내용

○ (용자범위)

세부분야	용자범위
시설설치자금	- 용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 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 2022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용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미완공 :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물 - 최소 용자신청액 1,000만 원

※ 분야별 세부적인 용자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별표 1] 참조

○ (지원제외)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 제7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 부지 매입(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용자신청자 직접 사용, 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세부분야 별 용자조건)

사업명	지원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대출금리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 원	분기 변동금리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100억 원	

※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 금리(※ 참조 : 2023년 2분기 현재 2.56%)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s://konetic.or.kr/loan>, 접수방법 “붙임1” 참조)

마. 제출 서류

○ 전체 공통 필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서식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용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PDF 등)로 등록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용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서식 2> 서약서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3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발급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s://www.mme.or.kr)에서 신청, 발급
4	벤처기업 확인서 ※ 용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확인발급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mesgokr)에서 신청·발급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및 등록하여 직접 발급 제출 생략 가능 ※ 위 나이스신용정보 방식 거부·미제출 시, 직접 스캔본 등록해야 하며 누락, 부실, 부족한 경우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필수)	
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8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9	[별표 3]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
※ 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환경산업(시설설치자금)

1. 시설설치자금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내용 및 예시
1	<p>용자요강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제시 자료</p> <p>※(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p>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p>(예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제조, 생산품 팸플릿, 키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환경법상의 각종 측정, 분석 대행업 등록증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업) 환경표지인증서, 재제조품질인증서 등 ※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신하여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인정
2	<p>장치, 시설 시공·제작 업체 사업자등록증(기성품 구매 시 구매처 사업자등록증)</p>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3	<p>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로셔, 팸플릿 등)</p>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4	<p>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p>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팸플릿,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5	<p>용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현장 최근 사진(1개월 이내)</p>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6	<p>건축 허가서(건축비 용자 신청 시)</p>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7	<p>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p>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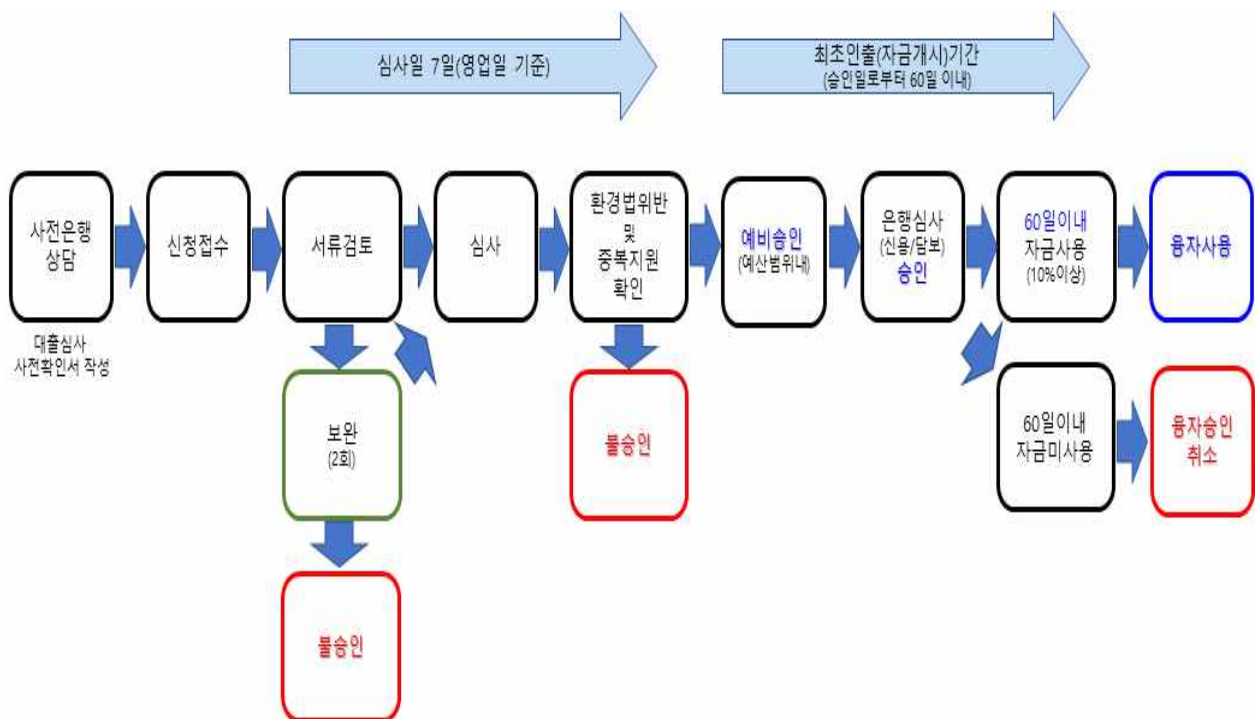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필수 여부	내용 및 예시
1	장치, 시설 시공 제작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2	용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 (기성 제품 구매 포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재하도·위탁 업체 명의를 견적서 인정)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용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3	시설장바건축 세부 도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팸플릿,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용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현장 최근 사진 (1개월 이내)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5	건축 허가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써 용자금 지원 신청 시 • 용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에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6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7	대기, 수질 등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 상 의무 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비율 아래 해당)
8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필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감량화 시설에 대한 용자금 지원 신청 시
9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바. 주요 기타 사항

- (용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용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붙임 2 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용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붙임 3 참조)
- (서류제출 기간) 용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을 따름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용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 용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심사 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용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중대위반' 이력 조회
 - ※ 환경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다툼 중인 경우를 포함
- 법령위반 이력 조회 기간 : 접수월 기준 과거 1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의 가동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 지자체 등 관할 기관으로부터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
- (중복지원 조회)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여부 조회

다.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17조 제1항 관련)

구분	번호	내 용	제출 서류	점수
글로벌 성장성	1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선정 공문(환경산업협회)	5
	2	환경기술 국제공동현지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해당 지정서	1
	4	환경분야 해외산업(환경산업체에 한함)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환 경 기 술 우수성	4	환경 분야 해외·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사권 보유	해당 증서	2
	5	환경 신기술 기술검증 또는 인증 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6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7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환경부 사 업 연계성	8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9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10	환경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해당 증서(환경산업기술원)	1
	11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 증서(환경산업기술원)	2
	12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13	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14	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당해연도)		
	16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당해연도)		
	17	환경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환경공단)선정 공문	
	18	환경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환경환경공단)선정 공문	
	19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해당 증서	
	20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공문 (환경산업협회)	
사회적 가 치 부합성	21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22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해당 증서	1
	23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1
	24	환경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25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5

라.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용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0' 순위

< 우선순위 우대 대상 >

- ① 환경부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한 다음의 기업
 - 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유효기간 5년 내) 기업
 - 나. 최근 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 다.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 라. ESG 컨설팅 지원 사업
 - 마.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사업 프로그램
 - 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Green Export)
 - 자.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 차.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입주기업
 - 카.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 ②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③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④ 국가현안 및 정부정책 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 기술원은 신청 기업에 자료를 2회에 걸쳐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용자금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3년 용자금 예산 내에서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용자 사용승인을 받은 기업은 용자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용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용자금 사용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용자승인기업은 용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s://konetic.or.kr/loan>)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용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용자금 사용 내역, 용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용자승인 포기 :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 기술원은 용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된 용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용자금 사용 완료보고

- 용자 사용기업은 용자금 사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s://konetic.or.kr/loan>)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을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용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용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용자금 사용 기간 완료일 이후 용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용자 사용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번호	제출 서류	용자금 사용 내역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용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신고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 (‘을’지), 위험물 제조소 등 필증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용자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 승인서	• 건축물 용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차량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운반구 구매 자금 지원 시 (예) 지게차, 방통설치 운반차량, 집게차 등
8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9	기타 용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 절차.
 2.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3.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신청 서약서.
 4.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신청서 서식.
 5. 용자 예비승인서. 끝.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이용절차

화면예시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원가입 - 가입 절차에 따라 정보입력 ② 공동 공인인증서 등록 - 용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등록, 미등록시 접수 불가 ③ 자금별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등록
<p>정보공개 용자사업 소개 용자신청 관리 용자승인 관리 고객센터 담당자 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분야, 세부분야 확인 후 기본 정보 입력

용자신청 관리

용자신청
용자신청 및 결과 조회

용자신청

정보공개활용동의서

용자금 사전동의서
정보공개 활용-사실확인 동의
○ 통 신청사상에 기밀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시행법, 시법규칙에 따른 신용정보 접근권, 신용정보의 제공권,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통제권 등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신용정보 등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제공권, 신용정보의 접근권,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자 통제권 등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시행법, 시법규칙에 따라 용자지원 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시의 용자 정보를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atb.go.kr)등 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용자권을 용자지원기 위해 제공하는 제반 서류(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용자지원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로 제출하여 용자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유무, 자금회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거래사실의 오류 및 적위내용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귀사의 책임이오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문자이메일 「미수신」 선택 시 용자신청, 승인통보 및 자금지원 관련 정보수신이 불가능 합니다.
○ 연락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용자신청서와 자동 정보연동이 불가능하나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초과 승인 동의서

초과 승인 동의서
본기 본 기장은 공한 용자금 초과승인 제도에 따라 전체 용자금 승인 규모 대비 용자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본인에게 승인된 용자금의 잔여액 인출이 불가능하여 잔여분에 대하여 승인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미인출 잔여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⑤ 정보공개활용, 초과 승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금융기관 정보 활용, 고용정보 조회 등 내용 확인 후 동의 항목 체크

용자신청서	우선심사순위	사업계획	개선실적	구비서류
<p>일반현황 ※ 필수항목 변경시 고의정보 은폐에서 탈이 나올 수있어 주의기 바랍니다</p>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사업장 주소	FAX	사업장자 입주여부		
본사 주소	갈상특우 일천시 청동면 통성길 7-3	한울루드		
본사 TEL	업종	FAX		
주 생산품	업태	상시근로자수		
홈페이지	벤처기업 여부	벤처기업 여부		
기업구분	대기	대기(기타)		
환경오염배출 인-허가보유사항	수질	수질(기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록 사항				
담당자1 성명	휴대폰	E-mail		
담당자1 부서	직책	문자메일		
담당자2 성명	휴대폰	E-mail		
담당자2 부서	직책			
환경산업특수분류				
보조산업분류				
<p>신청내용 ※ 필수항목항목입니다</p>				
용자신청 제목	사업장 시설운영차관	환경분야	제기를	
사업구분	이전	공사기간	2022-07-01 착수 - 2022-12-31 완료	
총사업비	300 백만원	용자신청금액	300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선택===	용자허당시기		
용자 취급은행	은행	신한은행	은행지점명	은행변화 번호
담당 부서	주소	담당 담당자	협의결과	===선택===

- ⑥ 용자신청서 작성
 - 일반현황, 신청 내용 작성
 - ※ 체크된 항목은 필수 작성 항목으로 미작성시 임시저장 및 다음단계 진행안됨

용자신청서	우선심사순위	사업계획	구비서류
<p>글로벌 성장성</p> <p>귀사의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미제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평가기준	구비서류	확인	
·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당해연도)	· (환경산업협력)선정 공문	<input type="checkbox"/> 5점	
· 환경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당해연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input type="checkbox"/> 5점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 해당 지정서	<input type="checkbox"/> 1점	
·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p>※ 3M 이하의 파일만 첨부가능</p> <p>증빙서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하기"/></p> <p>※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 (zip, hwp, doc, xls,xlsx, pdf, jpg, jpeg, bmp, tif, ait, pptx)</p>			
<p>환경 기술 우수성</p> <p>귀사의 해당사항에 모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미제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평가기준	구비서류	확인	
· 환경 분야 해외 국내 특허, 실용신안 소유(상표권 제외) 및 실시권 보유	· 해당 증서	<input type="checkbox"/> 2점	
· 환경 신기술 기술인증 또는 인증 기업	· 해당 검증서, 인증서	<input type="checkbox"/> 2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에 수행기업(최근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년)	·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p>※ 3M 이하의 파일만 첨부가능</p> <p>증빙서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하기"/></p> <p>※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 (zip, hwp, doc, xls,xlsx, pdf, jpg, jpeg, bmp, tif, ait, pptx)</p>			

- ⑦ 우선심사순위 항목 체크 및 자료 제출
 - 해당되는 항목 체크 및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 미반영)

▶ **III. 사업계획**

1. 사업장 개요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기입 미확정 값은 예상치 기입 가능

전년도 매출액 <input type="text"/> 백만원	상시 근로자수 현황 <input type="text"/> 명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총 <input type="text"/> 일, 1일 평균 <input type="text"/> 시간
변경 분야 보류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input type="radio"/> 킷물 <input type="radio"/> 화물	주요 수출제품	주요국가
원화기준 <input type="text"/> 백만원	외화기준 <input type="text"/> 천USD	원화기준 <input type="text"/> 백만원

2. 추진 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input type="text"/>					
분기별 자금 계획 필요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자금사용 내역

후측의 추가버튼을 활용하여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추가: 1회)

내역구분		내역	수량
1차	2차		
합계			
<input type="checkbox"/> 선택하세요.		<input type="text"/> 1차 내역을 먼저 선택하세요.	
총사업비	2,000 백만원	분자신청금액	2,000 백만원

- ⑧ 사업계획 내용 작성
- 전년도 매출액, 근로자수 등 기업현황 입력 필수
 - 자금사용 내역은 드롭다운 선택하여 세부내용 입력
 - 총사업비 및 용자신청금액은 '용자신청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전 항목 작성 필요)

▶ **NICE신용정보 원클릭 동의**

구비서류	내용	동의	동의여부
각종 서류 회계자료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거래처별 합계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별도 인터넷창에서 동의함도 필요)	동의하기	<input type="checkbox"/>

- 신청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류에 한해서만 열람됩니다.
- 업무처리담당자가 위 행정정보를 처리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아래 구비서류 목록에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NICE신용정보 원클릭 동의를 취소하려면 시스템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목록**

첨부파일은 한문당 최대 15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필의 첨부서류 누락될 경우, 「보관」 알림이 내려지며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별 업로드 파일 개수는 6개 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파일 최대 용량은 16Mbyte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업로드 가능한 확장자(pdf, hwp, doc, xls, xlsx, odf, [og, jpeg, bmp, ppt, gif, pptx)
- 첨부파일명은 특수문자 및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는 파일명으로 등록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등록
환경정책자율 평가를 제출신청자용 사전확인서 * 제출신청자용 사전확인서 다운로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서약서 * 환경정책자율 신청 서약서 다운로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간기업 확인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사업자등록증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최근 2개 년) * 총합 27개년 이하 신청업체 해당안됨	선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국세납세증명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지방세납세증명서	필수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⑨ 구비서류 및 제출
- 나이스 원클릭 동의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 납세증명원, 지방세납세 증명원) 또는 스캔본 직접 제출
 - (※ 동의하기 클릭 후 필히 나이스 원클릭 간소화시스템 안내에 따른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나이스 원클릭 동의 제출 제외 서류는 신청기업 직접 제출 필수서류 미제출시 불승인

○ 동의서 및 서약서

초과승인 확인 동의

상기 본인은 용자금 **초과승인 제도**에 따라, 금년도 용자금 예산이 소진되어, 승인서 상의 용자금 중 미인출 잔여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잔여액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가인출이 불가능하며**, 미인출 잔여액은 **기술원의 연계승인을 받은 경우** 익년도 용자금 예산에서 신청하여 인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도 미인출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관련법규 : 용자운용요강 제11조(초과승인 및 연계승인)

* 초과승인 : 중도포기 및 담보부족 등을 감안, 예산규모의 200% 이내로 초과하여 용자 승인

* 연계승인 : 예산이 소진되어 용자승인액 중 미인출 부분에 대하여 익년에 용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자승인을 다음 연도로 승계

성실이행 준수 서약

1. **[최초인출기간 및 사업기간 준수]** 운용요강 제16조(최초인출기간), 운용요강 제13조(사업기간)
 - 가. 최초인출기간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용자승인액의 10%이상 인출)
 - 나. 사업기간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 승인일로부터 180일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용자 : 승인일로부터 240일

※ 불가피하게 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장 신청 필수
2. **[각종 보고의무 준수]** 운용요강 제18조(승인취소), 제19조(용자금회수), 제22조(사업자의 보고의무)
 - 가. **[진행관리 보고]** 용자금 인출 후, 기술원이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시 진행보고 필수
 - 나. **[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일 또는 용자금 전액 인출 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 필수(증빙자료 필수)
 - 다. **[각종 환경법 위반·처분 및 수사·재판 사항 보고]** 환경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수사·재판 시, 즉시 해당 사실을 기술원에 보고 필수
3. **[기타 성실의무]** 기타 용자금 신청 및 자금사용 등 제반 사항은 환경부가 승인한 용자운용요강 및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행시 기술원의 처분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동의하였으며, 위의 사항에 대한 위반에 따른 기술원의 처분에 대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기술원의 규정과 요강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서 및 서약서 내용을 동의 합니다.

발당자성명:

※ 본 동의서 및 서약서는 대표자 및 담당자의 서명 대신, 온라인상의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목록

임시저장

신청완료

신청삭제

⑩ 서약서 및 동의서 제출
- 초과승인 확인 동의, 성실이행 준수 서약 확인 후 동의 체크 및 담당자 서명 작성 후 신청 완료 버튼 클릭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사명 : 미래환경산업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표자 : 김한국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기술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본 은행은 위 기업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본 확인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 내용에 대한 대출(여신)심사 결과와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약속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위 기업에 대한 실제 평가와 대출(여신)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 민간은행 지점 : 불광동지점
 소속 : 기업대부계 성명 : 차장 이환경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용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용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용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 다. 용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 라. 용자금 사용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가. 신청기업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 나. 용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 다. 용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용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용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용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용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_____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4

환경정책자금 용자 신청 서식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시설설치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중, 대기 *중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용자신청 제목 (공사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 0 0		전화번호	직접 입력	
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 _____ 일, 1일 평균 _____ 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i>100자 이내</i>									
용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용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i>자동합산</i>	<i>자동합산</i>	
구분 ▼	구분 ▼	<i>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i>	<i>숫자</i>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토목공사	조성공사
건축공사	건물매입, 설계비, 건축비, 건축감리비, 가설건축물, 전기공사, 통신장비, 소방공사, 보안설비, 환기시설, 자동제어(PLC) 장치, 보일러, 살수장치
생산시설	기계설계비, 계측장비, 제품포장설비, 압축기, 파쇄기, 선별기, 생산기계시설, 냉각장치, 기타 생산시설
운반시설	차량운반구 구입, 중장비 구입, 기타 운반설비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일반시설 공사, 기타 비용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신청서						처리기간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업체명	회원정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설립일자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회원정보		
본사	주소	회원정보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사업장	주소	직접 입력			산업단지 입주여부	산업단지명 직접 입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환경오염배출 인·허가 보유 사항	직접 입력(수질 *종, 대기 *종 등)			환경 업종·영업 인·허가 등록 사항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신청내용	용자신청 제목 (공시명 또는 자금 주요용도)		직접 입력					
	시설공사기간 또는 자금사용기간		(착공착수일) 0000.00.00 직접 기재		(완공예정일) 0000.00.00 직접 기재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용자신청액		00000 백만원	
	담당자 1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담당자 2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용자금 취급은행	000 은행 000000 지점		은행 담당자	000		전화번호	직접 입력	
<p>상기와 같이 용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0000 년 00 월 00 일</p> <p>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p> <p>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p>								

사업 계획서

1. 사업장 개요

영업 현황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백만원	명	총_____일, 1일 평균_____시간	
환경 분야 보유 인허가 사항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백만원	천USD

2. 추진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100자 이내									
용자신청 환경시설 근거법	근거 법령, 의무 법령 및 조항 기재									
용자금지출 계획일정 (단위: 백만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소요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용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대기	대기오염집진기, 비산먼지역제시설, 비산배출저감관리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방지시설, 대기 TMS, 적산전력계, 실험실분석용 대기 자가측정기기,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장비, 기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수질	수질오염관리시설, 절수·빗물·중수도설비, 수질 TMS,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실험실분석용 수질 자가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수질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토양	토양오염방지시설, 오염토양 정화복원 비용, 기타 토양오염물질 측정기기, 기타 토양오염물질 저감관리시설
소음·진동	소음진동방지시설
빛공해·악취	빛공해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화학물질	화학물질취급안전시설, LDAR(비산배출관리시스템), 기타 유해화학물질 배출방지시설
분뇨·폐기물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기타 폐기물 저감 관련 시설
토목·건축	설비부지 조성공사, 철골구조물, 건축(가설)구조물, 설계엔지니어링
전기공사	배전설비, 환경설비관리제어시스템
기타비용	기타 부대설비, 기타 기계장치, 기타 비용

붙임 5

용자 예비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h1>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승인서</h1>				
2023-4110-1234-0		2023-05-08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1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오염방지시설자금				
용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승인내용	용자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공란							
	최초인출기간	2020-08-14 ~ 2020-10-1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용자금사용기간	2020-08-14 ~ 2020-12-31		대출금리	분기 변동금리			
중요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용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용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용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용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시 용자승인 취소 및 용자금 강제회수 ‘시설’에 대한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최초인출기간 내 용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용자승인 취소 사용기간 내 용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용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용자지원 불가. 당해연도 용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용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용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용자금의 지원이 가능 용자승인 기업은 용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용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p>환경정책자금 용자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금 지원을 승인합니다.</p> <p>발급일 2023-08-14</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인</p> <p>출력일 0000-00-00</p>								